

<p>력이 10% 상승된다고 봐도 되겠네요?</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글쎄, 반드시 직결된 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p> <p>○鄭海純委員 아니, 기업체 인력 고용창출도 10%는 어떻게든 줄여 나가고 공무원도 줄여 나가고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므로 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노는 사람이 많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겠네요?</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과다한 인력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사를 해서 한다는 뜻이지 10%를 딱 못을 박아서 그대로 감축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p> <p>○李康珍委員 그러니까 지금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자꾸만 본질을 비켜 나간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바로 그런 것입니다.</p> <p>실장님께서 자꾸 10명을 증원했다, 순증원은 사실은 얼마 안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p> <p>○李康珍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 결과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p> <p>그렇게 본다면 금번에 공무원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자꾸만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발의하시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p> <p>議會에서 3대 議會부터 지금까지 죽 議員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죠?</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물론입니다.</p> <p>○李康珍委員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어떻게 하면 議員들이 의정활동을</p>	<p>하는데 지원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p> <p>○李康珍委員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진 것이고…….</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p> <p>○李康珍委員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순증원은 10명이다, 사실은 뭐…….</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늘어난 데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p> <p>○李康珍委員 이상입니다.</p> <p>○委員長 黃仁明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市議會 專門委員室에 5급 행정직 배치는 강원도에서는 이미 96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鄭海純委員님 이해하신다면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그려는데…….</p> <p>○鄭海純委員 네.</p> <p>○委員長 黃仁明 그러면 서울特別市長이 제안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金信浩委員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金信浩委員의 1인의 委員이 수정제안하신 修正動議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権 3打)</p> <hr/> <p>(參 照)</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2조제2호중 “221명”을 “223명”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중 “2,554명”을 “2,583명”으로, 동조</p>
---	---

제2호중 “197명”을 “223명”으로, 동조제3호 중 “5,733명”을 “5,743명”으로, 동조제4호중 “9,754명”을 “9,7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特別市法律顧問運營條例案(申炳植議員外 12人發議)
 3. 서울特別市立法·法律顧問運營條例案(李容富·鄭水華議員外 42人發議)
- (12時 33分)

○委員長 黃仁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法律顧問운營條例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立法·法律顧問운營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議事権 3打)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유사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法律顧問운營條例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立法·法律顧問운營條例案은 다음會議期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権 3打)

○委員長 黃仁明 企劃管理室長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우리市의 현안사항의 하나인 지하철 건설 재원에 대한 국고보조문제, 그리고 지방재정관련제도의 개선, 시내버스 교통체 감면, 삼풍사고 보상재원 국고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에 趙淳서울市長께서 財政經濟院長官을 만나 뵙고 지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그때 政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企劃管理室에서는 市長께서 하신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에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市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青瓦臺, 總理室, 中央 각 部處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각 室·局과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委員 여러분께 보고

를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報 告)

地下鐵建設財源 支援

1. 제2기 地下鐵建設費의 國庫補助 擴大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대한 관계부처 합의서 2단계 시내구간은 총건설비의 25%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용자금으로 지원된 3,540억 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하고, '98 이후 건설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50%까지 확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12.5. 國務總理 主宰下에 서울市 제2기 地下鐵建設 財源調達과 關聯하여 關係部處(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 서울시)간의 합의가 있었음.

○1단계 구간(47km)의 건설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2단계 시내구간(103km)은 총건설비의 25%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실제 2단계 市內區間에 대한 政府補助는 '96년까지 總投資費의 18%에 불과하여 建設財源調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96년까지 총투자비: 3조 9,168억 원

○'96년까지 정부보조지원: 7,100억 원(총투자비의 18%)

○'96년도까지 정부용자금: 3,540억 원(총투자비의 9%)

□서울市 제2기 地下鐵 2단계 市內區間 建設費의 融資金은 實質的인 政府支援이라 할 수 없으므로 國庫補助金으로 轉換하고 '98 이후 建設費에 대한 國庫補助를 建設費의 50%까지 擴大하여 支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기 地下鐵建設費의 50% 國庫補助

서울의 지하철은 수도권 주민 2,02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적 기간시설이므로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과도한 지하철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제3기 지하철 건설은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